

2024

개인형 이동장치교통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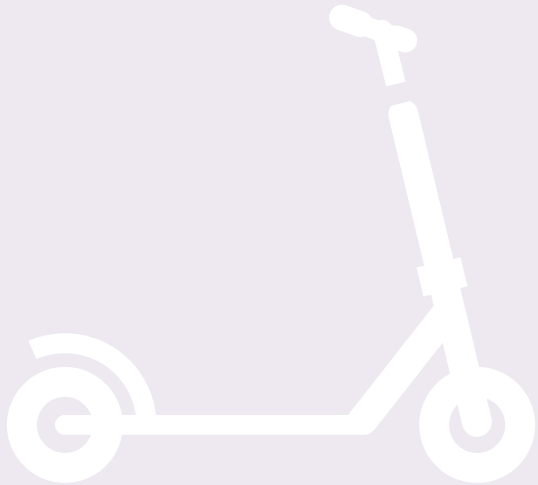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24

개인형 이동장치교통 FAQ

KOREA TRANSPORT INSTITUTE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이나 사고 등과 관련된 규정을 잘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보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선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FAQ”를 2021년에 처음 발간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FAQ 2024”는 “기본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등을 추가했던 2023년 판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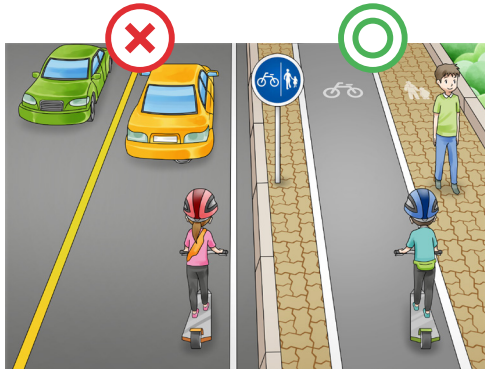
주의

- 본 책자는 작성시(2024년)의 법규정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후 규정 개정 등이 시행된 경우 현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관련 답변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판례 등을 참조하였으며, 만약 사고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본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참조

- 다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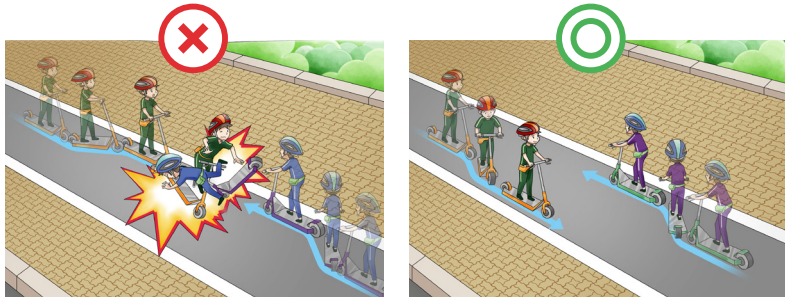


<올바르지 않은 통행>

<올바른 통행>

✓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보행자부터 자동차까지 오른쪽 통행이 기본 원칙입니다.
- 길에서 서로 마주칠 때, 각자의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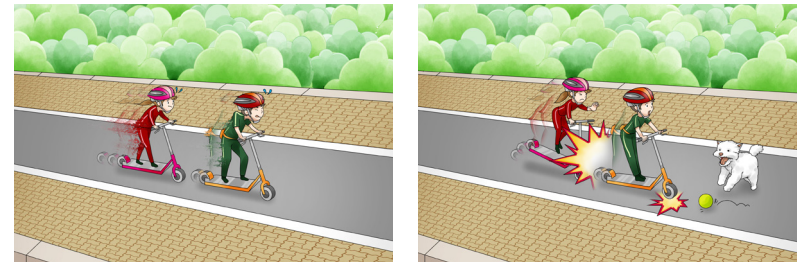


<올바르지 않은 통행>

<올바른 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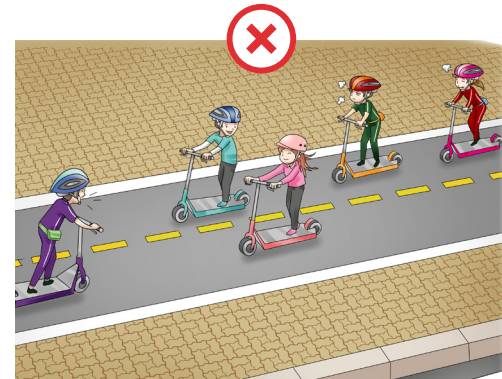
✓ 앞에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및 자동차등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앞 차의 갑작스러운 급정거시 충돌 없이 정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의 가장 기본 중 하나입니다.



✓ 2 대 이상이 가로로 나란히 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Q11 참조

- 병렬주행 허용 표지가 있거나, 같은 방향으로 2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1열로 통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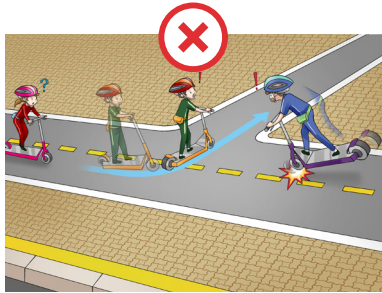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본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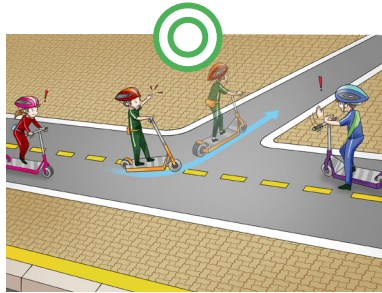
✓ 좌회전, 우회전, 정지, 서행 등을 할 때는 미리 수신호로 알려야 합니다.

Q20 참조

- 수신호시 균형을 잃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지시한 후에 회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특히, 전동킥보드).



<올바르지 않은 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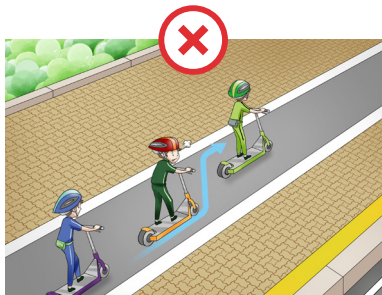


<올바른 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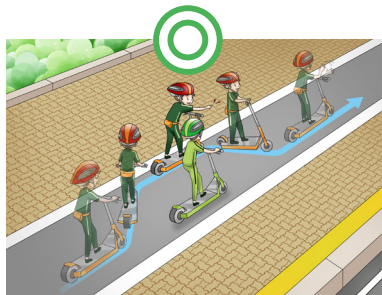
✓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급적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Q5 참조

- 뒷차가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왼쪽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양방향 교행시 서로의 안전 간격 확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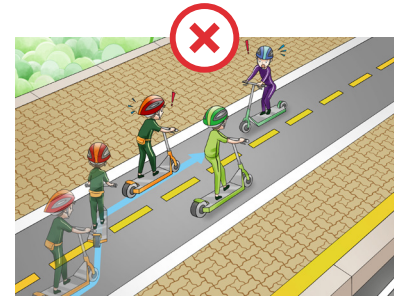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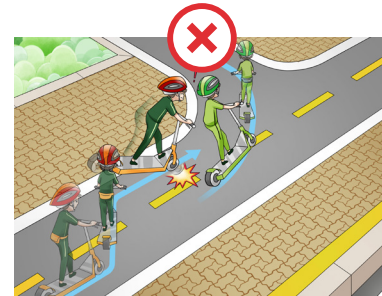
<올바르지 않은 통행>



<올바른 통행>

✓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간 또는 상황에서는 추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앞의 운전자가 좌회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 - 급경사나 급커브 구간 - 터널 구간
- 양방향 통행 자전거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
- 앞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른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월 중인 경우



✓ 야간, 악천후시 또는 터널을 통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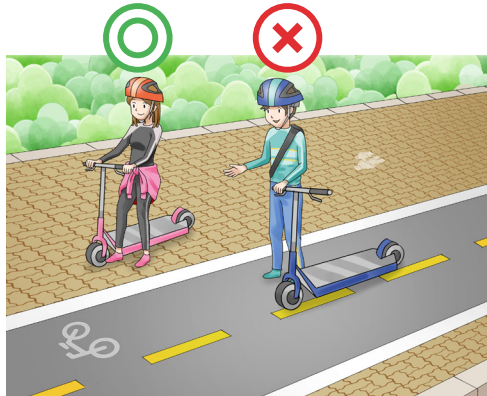
- 전조등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본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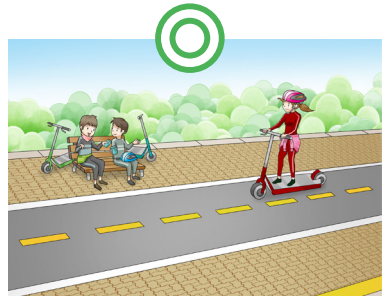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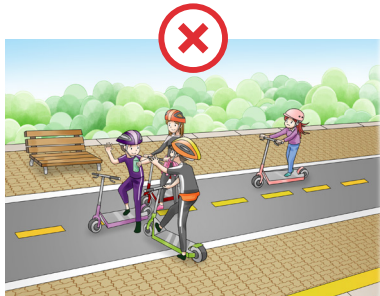
✓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걸어가갈 때는 보행자 통행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갈 때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가 됩니다.
- 따라서 자전거 통행로나 차도에서 벗어나 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로로 걸어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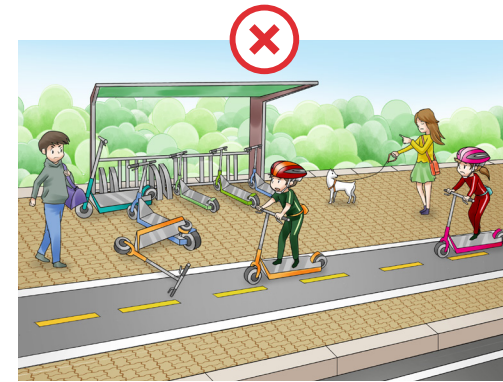
✓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정지하고 있을 때는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 자전거 통행로나 차도에 서 있으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자전거 통행로나 차도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전거도로나 차도에 서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 가장자리쪽에 서서 통행하는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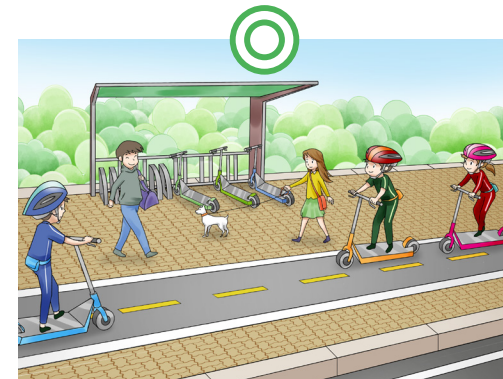


✓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 및 보관할 때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구역 노면표시 등)에 올바르게 주차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주차〉



〈올바른 주차〉

Contents

개인형 이동장치교통 FAQ 2024

Q1.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12	Q16. 개인형 이동장치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36
Q2. 도로교통법을 보면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다 지켜야 되나요?	14	Q17.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서 음악(헤드폰, 이어폰 등 사용)을 듣는 것은 괜찮나요?	38
Q3.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가야 하나요?	16	Q18.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서 휴대폰 전화 사용은 괜찮나요?	39
Q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8	Q19. 개인형 이동장치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	40
Q5.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20	Q20.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할 때 방향지시를 꼭 해야 되나요?	42
Q6. 횡단보도를 이용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길을 건너가도 되나요?	22	Q21.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을 써야 하나요?	44
Q7.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24	Q22. 자전거전용차로에 자동차가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46
Q8. 직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우회전하는 차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6	Q23.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	47
Q9. 일방통행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도 일방통행인가요?	28	Q24.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48
Q10. 자전거도로에 통행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통행인가요? 일방통행인가요?	29	Q25.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도 되나요?	50
Q11. 개인형 이동장치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30	Q2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공공시설물(전주, 교차로제어기 등)로 인해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행로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51
Q12.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 등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32	Q27.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규명은 어떻게 되나요?	53
Q13.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느 차로로 가야 하나요?	33	Q28. 야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야 하나요?	54
Q14. 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34	Q29. 개인형 이동장치도 범규위반으로 단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나요?	57
Q15. 자전거도로에도 속도규제가 있습니까?	35	Q30.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범규 위반시 범칙금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58
		Q31.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꼭 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60
		Q32.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보도로 가도 되나요?	62
		Q3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63
		이것도 알아두세요	65

Q 01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A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속도 25km/h 이상인 전동킥보드나 원휠 등의 장치들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며,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설

현행 법규정 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교통수단 구분	종류*	추가 요건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 - 최고속도 25km/h 미만 - 차체중량 30kg 미만
	전동이륜평행차	
	Throttle 전기자전거 Throttle/PAS 겸용 전기자전거**	
자전거 (자전거법***)	일반용 자전거	-
	PAS 전기자전거	- 최고속도 25km/h 미만 - 차체중량 30kg 미만

*안전 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이륜자전거), 72(전동보드)의 구분

**PAS: Pedal Assist System

***자전거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

- 전동킥보드: 배터리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이 없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
-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자기평형장치(자이로스코프) 및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각 측면에 바퀴가 있고 그 사이에 발판 및 핸들이 있어 입식자세로 탑승하여 핸들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동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40 (이륜자전거)

- 전기자전거: 반드시 페달 주행기능이 있으며, 전기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하며, 구동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 Throttle 전기자전거: 가속기 레버를 조작하여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 b) PAS(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 c) Throttle/PAS 전기자전거 Throttle과 PAS 구동방식 모두를 지원하는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는 a와 c의 방식으로 구동되는 전기자전거를 의미하며, b는 자전거로 구분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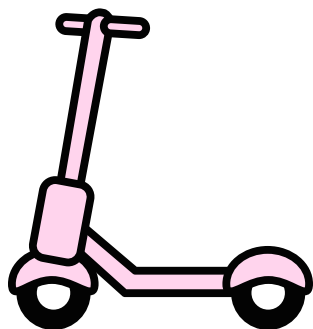
<Throttle, Throttle/PAS 전기자전거>

Q 02 도로교통법을 보면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다 지켜야 되나요?

A 도로교통법상 “차”, “차마”, “자전거등”,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해설

차마	차	자동차	} 자동차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 자전거등
		건설기계		
	그 외*			
우마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 행정안전부령

- 1) 전동킥보드
- 2) 전동이륜평행차
-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Q 03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가야 하나요?

A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도 이용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행위는 위법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고 시

보도 통행 중 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 발생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합니다. 또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

•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족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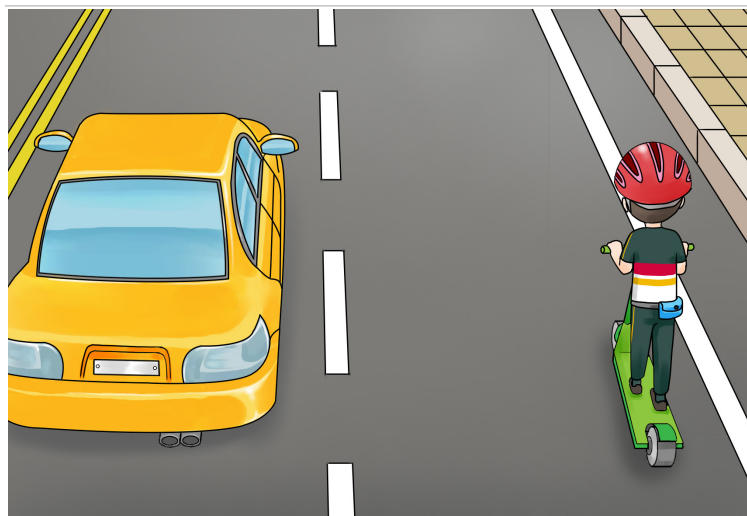
-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체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Q 0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고 시

우측 가장자리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해설

현재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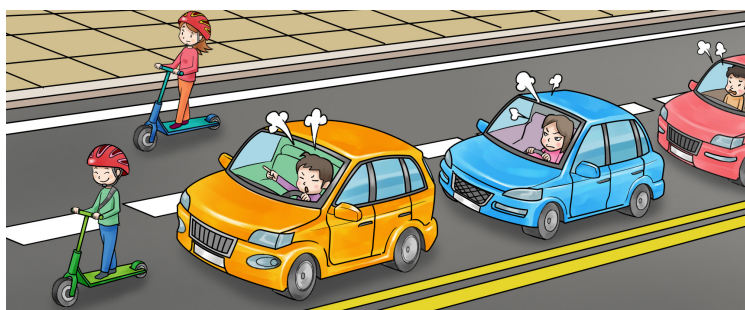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Q 05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A 안됩니다.



위반 시

이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 사항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우측 끝 차로 이외의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의 가장 끝(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차도를 통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로 분류되므로, 우측 끝 차로 통행외에도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 ⑥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자전거등

〈사고시 보험처리 사례〉

아래 그림1과 같이 우측 끝 차로로 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가 후미 추돌한 경우에는 후행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합니다(단,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위반을 이유로 과실을 일정 부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2와 같이 만약 개인형 이동장치가 중앙으로 들어오다(차로변경 등) 사고가 난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60%의 기본과실을 적용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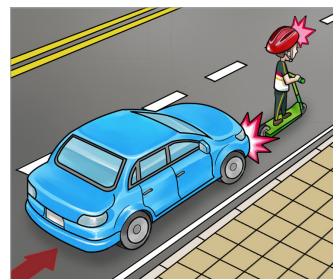


그림1 : 선행개인형 이동장치를 후미추돌한 경우 자동차 기본과실 100% (개인형 이동장치0%)



그림2 :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안쪽으로 진입하다가 충돌할 경우 자동차 기본과실 40% (개인형 이동장치 60%)

※ 내용출처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 손해보험협회

Q 06 횡단보도를 이용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길을 건너가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걸어 가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여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 횡단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이동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과실이 증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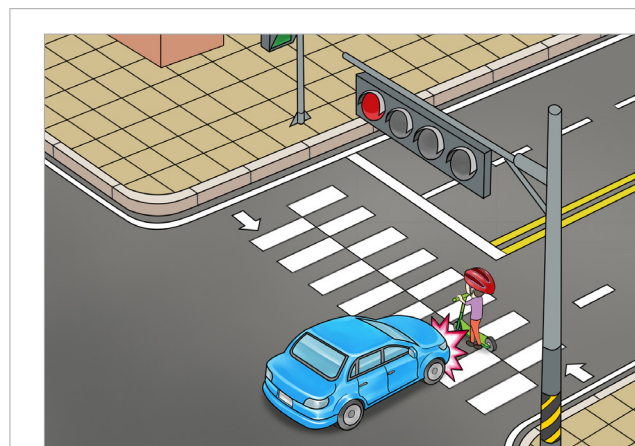
해설

-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이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93조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원)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	제27조제1항·제2항·제7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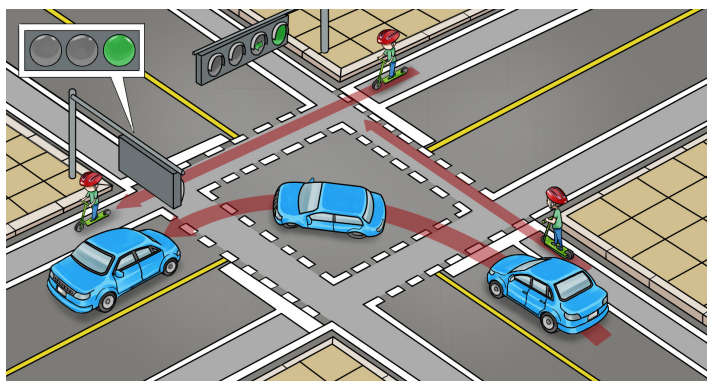
보행신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횡단한 경우 자동차의 기본과실 100%

※ 내용출처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 손해보험협회

Q 07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합니다(훅턴, Hook-Turn).

- 신호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 시 이동할 수 없으며, 직진 신호 시 이동해야 합니다.
-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두 번의 직진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합니다.



위반 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면 법규위반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좌회전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추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Hook-Turn' 방식의 좌회전으로, 일단 직진한 후 다시 좌측 방향의 도로로 직진하는 방식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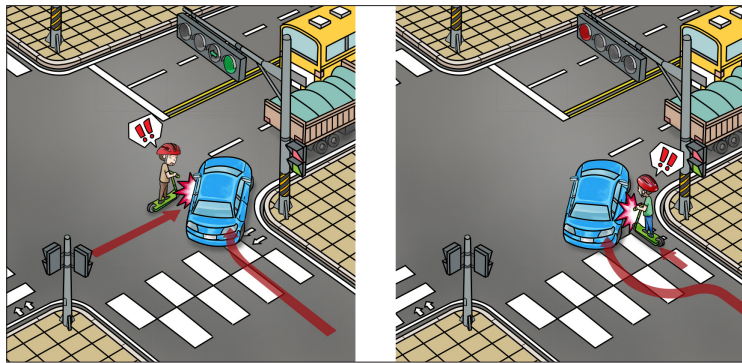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비고 1.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Q 08 직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우회전하는 차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포함)는 우회전하는 차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신호에 따른 직진차 우선〉

〈같은 방향일 경우, 앞차 우선〉

※ 내용출처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 손해보험협회

사고 시

직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의 사고 시 자동차의 기본과실이 더 크게 됩니다.

해설

-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차의 일반적인 통행우선 순위를 따릅니다.
-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의 경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우선, 오른쪽 우선 등 다양한 조건을 따릅니다 (첨부된 관련 규정 참조).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Q 09 일방통행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도 일방통행인가요?

A 일방통행입니다.

위반 시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주행에 해당하는 높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되므로 차의 통행방법에 준하여 통행합니다.



자전거도로에 통행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통행인가요? 일방통행인가요?

10 Q

A 일반적으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전용도로, 전용차로)의 경우 일방통행이며,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입니다.

※표지판, 노면표시 등으로 통행방향이 지정된 경우는 이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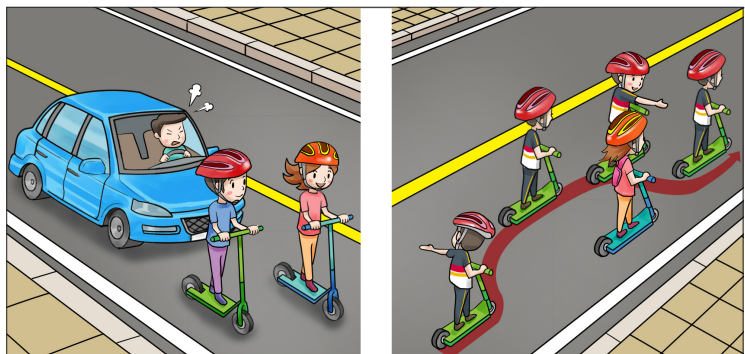
해설

일반 차로 우측에 자전거전용차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 차로의 방향과 동일하게 일방통행입니다. 그 외의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별도의 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향 모두 갈 수 있습니다.



Q 11 개인형 이동장치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A 병렬 주행은 불법입니다. 추월은 가능합니다.



• 같은 방향으로 2개 이상의 차량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는 각각의 차로로 1대씩 주행할 수 있습니다.

※ 병렬 주행 가능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합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

사고시

위반 중 사고발생 시 법규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실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 병렬 주행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대 이상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앞지르기를 할 경우, 뒤차 등에 수신호로 알리고 앞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음성이나 경음기를 통하여 앞지르기 함을 알려줍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Q 12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 등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행자는 우선순위가 인정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와 자동차등간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규정대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면 됩니다.



Q 13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느 차로로 가야 하나요?

A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합니다.

사고시

개인형 이동장치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 중 버스에 의하여 추돌사고를 당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도 법규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실을 상당 부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의 전용차로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즉,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14 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갈 때는 보행로를 이용하고, 보행로가 없을 경우에는 가급적 차도나 자전거도로 외의 여유공간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가는 자는 보행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도로에도 속도규제가 있습니까? 15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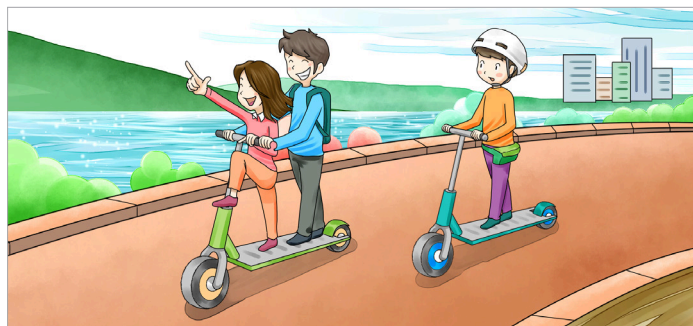
A 현재 자전거도로의 속도 규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고려하여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된 속도 이내로 운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16 개인형 이동장치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A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이 2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안전을 고려하여 1인 승차를 권장합니다.



<X>

<O>

위반 시

승차정원 초과 운행 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 ①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 ②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93조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원)
3의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제50조제10항	4



Q 17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서 음악(헤드폰, 이어폰 등 사용)을 듣는 것은 괜찮나요?

A **현행 법률상 규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합니다.**
 - 휴대폰 등을 사용해 방송 등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사고 시

헤드폰, 이어폰 등을 착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산요소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헤드폰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한쪽(오른쪽) 귀에만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서 휴대폰 전화 사용은 괜찮나요? 18 Q

A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해설

운전 중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입니다. 또한,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폰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93조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원)
15. 운전 중 휴대폰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3

Q 19 개인형 이동장치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사고발생시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반 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사고발생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 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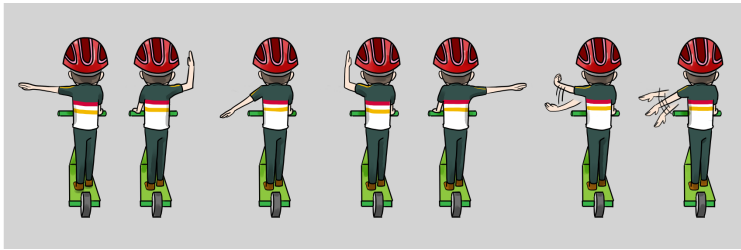
〈별표 8〉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원)	
		개인형	자전거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제44조 제1항	10	3
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제44조 제2항	13	10

Q 20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할 때 방향지시를 꼭 해야 되나요?

A 네, 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합니다.

- 수신호시 균형을 잃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를 하면서 회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방향지시 방법 (오른손으로도 가능함)〉

위반 시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면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되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다 사고 발생 시 진로변경신호 불이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차와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방향지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하여 신호를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1조 관련)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쪽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6. 서행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깜빡일 것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93조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원)
52.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 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제38조제1항	1

Q 21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을 써야 하나요?

A 네, 헬멧을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위반이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우리나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 1위 (80%)는 머리부상입니다. 따라서 인명보호장구를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93조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원)
38의2.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제50조제4항	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8조4항 본문 관련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원)
10.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160조제2항제3호	2

Q 22 자전거전용차로에 자동차가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A 불법주정차로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차량고장, 위급 또는 위험방지, 경찰공무원의 명령 등 비상 상황인 경우는 정차 가능합니다.

사고시

일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를 뒤에서 추돌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본 과실이 100%가 되나 불법주차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됩니다.

해설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설치되는 전용차로로, 자동차의 주차는 물론이고 통행 자체도 불법입니다.(긴급자동차의 통행, 자전거등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의 일시 통행은 가능)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②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③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Q 23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적용받습니다.

해설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도로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 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Q 24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A 네,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는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에 해당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이에 해당되며,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항상 운전면허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 가. 대형면허
 - 나. 보통면허
 - 다. 소형면허
 - 라. 특수면허
 - 1) 대형건인차면허
 - 2) 소형건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 가. 보통면허
 - 나. 소형면허
 -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93조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원)
1의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제43조	10

Q 25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도 되나요?

A | 안됩니다.

위반 시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는 만16세 이상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8조4항 본문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원)
1의3.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제160조제2항제9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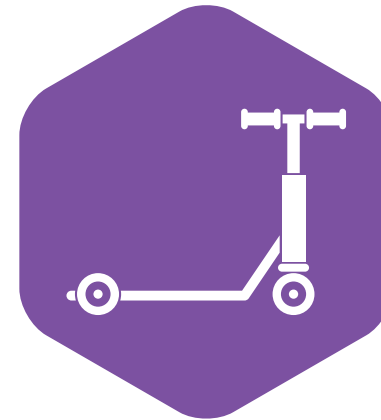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공공시설물(전주, 교차로 제어기 등)로 인해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행로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26 Q

A | 원칙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보행자를 보호하며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과실 책임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보도침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규명은 어떻게 되나요? 27

Q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제13조(차마의 통행)

-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A |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비중이 달라집니다. 책임비중은 자전거도로 종류와 사고형태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시 보행자에게도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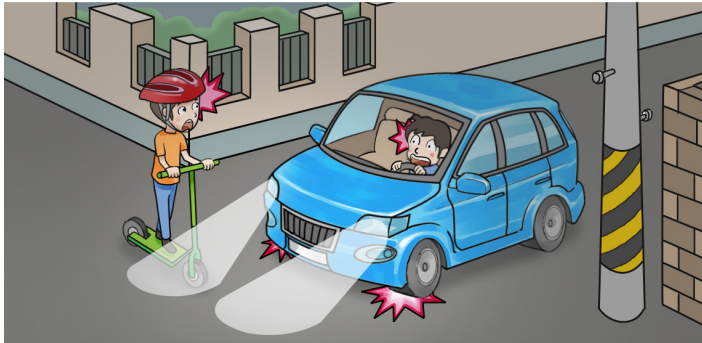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Q 28 야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야 하나요?

A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전을 위해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보다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사고 발생시 가산요소로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해설

-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마에 해당하므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등화를 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 통행시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통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너무 밝은 등을 사용하거나, 조사각을 높여(상향등) 반대차선의 다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법규위반으로 단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나요? 29

Q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93조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만원)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1

A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할 수 있으며, 범칙금액이 규정된 위반일 경우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규정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법규위반 중 사고 발생시 높은 과실을 적용받게 되며,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설

-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등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시의 벌칙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Q 30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법규 위반시 범칙금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의 위반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사항에 대해 규정된 벌칙이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반내용, 사고후 조치 등에 따라 금고나 벌금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설

-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에 해당되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시의 벌칙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범칙행위	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1조의2(벌칙)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3조(벌칙)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제154조(벌칙) 세부내용 생략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6조(벌칙) 세부내용 생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제158조(형의 병과) 세부내용 생략	벌금 또는 과료(科料)와 구류의 형
제160조(과태료) 세부내용 생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Q 31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꼭 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A 사상자가 있거나 물건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착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있을 때는 가까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상정도가 심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위반 시

- 사상자 구호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제154조의 벌칙(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해설

-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사상자 구호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가능).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Q 32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보도로 가도 되나요?

A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됩니다.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보도로 주행하면 범칙금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Q 3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행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3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서 주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비교〉

	자전거	전기 자전거(PAS형)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	-	만13세 이상	만16세 이상 (과태료 10만원 부과)
면허	-	-	필요 (범칙금 10만원 부과)
2인 이상 탑승	-	-	전동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범칙금 4만원 부과)
등화	필수	필수	필수 (범칙금 1만원 부과)
헬멧	필수	필수	필수 (범칙금 2만원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가중 처벌	-	-	가중처벌 대상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전거도로의 종류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분리된 자전거도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구분되어 있는 형태



※ 자전거와 보행자는 각각 지정된 통행로로 통행해야함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형태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기준(2017.5)」

2024

개인형 이동장치교통 FAQ

KOREA TRANSPORT INSTITUTE

참여연구진 선임연구위원 정경옥
주임연구원 이동윤

발행인 김영찬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www.koti.re.kr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 화 044) 211-3114